시 민

문서번호	장애인복지정책과-6165	
결재일자	2018.4.4.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
방침번호		

주무관		장애인거주시설팀장	장애인복지정책과장	
협조	주무관			





# 장애인 소규모시설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(안)

2018. 4.

장애인복지정책과 (장애인거주시설팀)

#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(안)

보조금 기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이 소재지 변경(자치구 간) 시 보조금 지원 공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 변경을 검토하여 보고드림

# 1 추진근거 및 현황

# □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)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
- 장애인복지법 제81조(비용의 보조)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
- **장애인 주간·단기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(안)** ('16.4. 장애인복지정책과)

## □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

('18.3월 현재)

	개소수	종사자수	이용현원	예산 지원 기준
장애인단기거주시설	38개	202명	412명	· 5인 인건비 · 운영비 12백만원
장애인주간보호시설	120개	369명	1,553명	· 3인 인건비 · 운영비 10백만원
장애인공동생활가정	180개	167명	668명	· 1인 인건비 · 운영비 7,682천원

### □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

※ 장애인 주간·단기 보조금 지원 공통기준(안) ('16.4. 장애인복지정책과)

### ○ 기 지원시설 중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

변 경 사 항		보조금 지원 여부	
	자치구 내	계속 지원	
소재지 변경	자치구 간	신규 지원 절차 거쳐 지원 (폐지 후 신규 설치 신고)	

# 2 문제점 및 개선방안

#### □ 문제점

- 장애인 공동생활가정·단기거주시설·주간보호시설 등은 소규모 시설 특성상 부득이한 사정(전세기간의 만료, 재건축 등)으로 소재지를 변경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
- 자치구 간 소재지 변경 시 기존 시설 폐지·신규 설치·신규 지원절차를 거쳐이하여 보조금 지원 공백기간(3개월 이상)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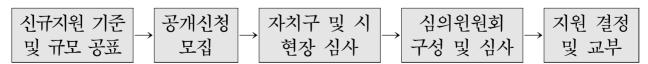
#### □ 개선방안

- 자치구 간 소재지 변경 시 자치구 검토에 의해 보조금 계속 지원 결정
  -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하되, 자치구 검토 절차를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
  - 지원절차 : 제출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 후 검토의견 제출 [자치구] ⇒ 지원결정(승인) 및 보조금 교부 [시]

## □ 장애인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(안)

# 신규 지원 기준 (기존과 동일)

- 지원대상
  -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관내 소재 시설
  - 설치신고 수리 후 3개월 이상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한 시설
  - 최근 3년 내 인권위 인권침해사건 통보 등 중요민원 미 발생 시설
- 지원절차



- 지원시기 : 신규 지원 결정일 익월 초부터
  - ※ 단.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시기를 변경 결정할 수 있음

### 기 지원시설 중 변경에 따른 지원 기준

- 시설의 명칭, 시설의 장, 이용정원 변경 : 보조금 계속 지원 (기존과 동일)
- **시설종류 변경** : 변경된 시설의 보조금 <u>신규 지원</u> 규정적용 (기존과 동일)
- 소재지 변경

#### ──── 〈 선 행 조 건 〉───

- ①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(보건복지부, 서울특별시)에 규정된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충족 (면적, 종사자수, 거주인수 등)
- ② 기존시설 이용자 · 보호자, 종사자의 전원 동의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
- 자치구내 이전 : 선행조건에 대한 자치구 검토 절차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 (변경)
- 자치구간 이전 :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하되 선행조건에 대한 자치구 검토 절차 거쳐 보조금 계속 지원 (변경)
  - ※ 지원절차 : <u>제출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 후 검토의견 제출〔자치구〕</u>
    ⇒ 지원결정(승인) 및 보조금 교부 [시]
- **시설 운영법인 변경** : 기존 시설의 폐지 후 신규설치에 해당 되므로 신규 지원 절차를 거쳐 지원 (기존과 동일)
  - ※ 단,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되는 시립 및 구립시설의 경우, 운영주체가 자치 단체이므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어도 보조금 계속 지원
- 운영주체(시립, 구립, 법인 등) 변경
  - 법인 → 시립·구립으로 변경 : 보조금 계속 지원 (기존과 동일)
  - 시립·구립 → 법인으로 변경 : 신규 지원 절차 거쳐 지원 (기존과 동일)
- □ 시행일자 : '18. 4. 4. (수)
  - 붙임 1. 시설 관리카드 1부.
    - 2. 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.
    - 3. 동의서(이용자,보호자,종사자) 서식 1부.